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81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이원택・이기헌・이병진

임미애 · 서삼석 · 이건태

위성곤 • 문대림 • 이수진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

제6조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3. (생 략)	1. ~ 53. (현행과 같음)
<u><신 설></u>	5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
	른 어선안전감독관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